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2. 9. 16(금) 10:00

제23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# 검 토 보 고 서

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

(교통건설국 소관)



**복 지 건 설 위 원 회**

전문위원 추병수

#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203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2. 9. 16.
- 라. 회부일자 : 2022. 9. 16.

## 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제144조, 「지방재정법」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금천구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함.

## 3. 참고사항

### ○ 관련법령

「지방자치법」제144조(예비비),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(예비비)

### ○ 관련서류 : 2021회계연도 결산서(안)

#### 4. 예비비 지출 현황

○ 재해·재난 목적 예비비

(단위: 원)

부서명	세부사업	지출결정액	지출액	집행잔액	지출사유
계		98,700,000	89,088,790	9,611,210	
교통행정과	자동차 등록 민원처리	96,000,000	86,388,790	9,611,210	코로나19 민생경제 지원대책 관련 취약계층 방역물품 지원(법인·개인 택시 및 화물 운수종사자 마스크 지급)
건설행정과	가로정비관리	2,700,000	2,700,000		코로나19 민생경제 지원대책 관련 취약계층 방역물품 지원

#### 5. 검토의견

○ 2021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

교통행정과 1건 9,600만원, 건설행정과 1건 270만원을 지출하였음.

지출 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방역물품 지원을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함.

○ 따라서 교통건설국의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되므로 타당한 지출이라 판단됨.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- 제144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-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

### □ 「지방재정법」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- 제43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,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6. 9.>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5. 28.>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. <신설 2014. 5. 28.>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4. 5. 28., 2021. 1. 12.>
- [전문개정 2011. 8. 4.]